
2026학년도 수시 (3월 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안양대학교 입학처



목 차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2. 전형 일정	2
3. 선발원칙 및 지원방법	2
4. 지원자격	3
5. 각종 인정기준	4
6. 전형 방법	6
7. 제출서류 안내	7
8. 원서접수 방법	9
9. 지원자 유의사항	10
10. 전형료 안내	11
11.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11
〈서식 1~2〉	1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 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3월 입학		
				정원 외	완전 정원 외	
				재외국민 ¹⁾ (최대 모집인원)	전 교육과정 이수자 ²⁾	북한이탈주민
광역	자유전공		93	9	적정인원 「사범계열, 공연예술학과,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스포츠계열자유전공」 제외	
인문 사회	신학과		26	2		
	사범계	기독교교육과	28	-		
		유아교육과	35	-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	23	2		
		영미언어문화학과	23	2		
		러시아언어문화학과	21	2		
		중국언어문화학과	23	2		
	인문계열자유전공		26	2		
	사회계열	글로벌경영학과	40	4		
		글로벌경영학과(야간)	39	3		
		관광경영학과(교직)	30	3		
		행정학과	27	2		
		행정학과(야간)	21	2		
	사회계열자유전공		28	2		
예 체 능	공연예술학과		20	-		
	음악학과(피아노, 성악, 관현악)		15	1		
	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		24	2		
	강화캠퍼스	게임콘텐츠학과	20	2		
	스포츠계열 (강화캠퍼스)	스포츠과학과	15	-		
		스포츠응용산업학과	30	-		
		스포츠계열자유전공	19	-		
자연 과학	이공계열	식품영양학과(교직)	30	3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27	2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야간)	23	2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25	2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25	2			
컴퓨터공학과		30	3			
정보전기전자공학과		60	6			
정보전기전자공학과(야간)		23	2			
소프트웨어학과		30	3			
도시정보공학과		35	3			
도시정보공학과(야간)		24	2			
환경에너지공학과		30	3			
융합학과		16	1			
강화캠퍼스	해양바이오공학과(교직)	21	2			
광역	이공계열자유전공		66	6		
강화캠퍼스	스마트시티공학과		35	3		
총 계			1,126	22명 이내	적정인원	

- ▷ 자유전공 : 1학년 2학기 이수 후 계열 상관없이 학과 신청(단,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신학과, 스마트시티공학과 제외)
계열별 자유전공 : 1학년 2학기 이수 후 해당 계열의 학과 신청
▷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방법, 전형요소 등은 대학구조조정 및 학칙 변경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장애학생 선발은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별 없이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대학생활지원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함

- 1)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선발하며,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내·외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2

전형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2025. 7. 7.(월) ~ 7. 11.(금) 17:00	- 온라인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없음) - 입학 홈페이지(enter.anyang.ac.kr) - 원서접수 대행기관(www.uwayapply.com)
서류제출	2025. 7. 7.(월) ~ 7. 11.(금) 17:00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2025. 7. 11.(금) 17:00 도착분까지
합격자 발표	2025. 7. 31.(목)	- 입학 홈페이지(enter.anyang.ac.kr)에서 조회 - 조회 시 합격통지서 확인 가능
합격자 문서등록	2025. 12. 15.(월) ~ 12. 17.(수)	-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서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등록이 처리되며,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2025. 12. 17.(수), 18:00까지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및 문서등록	2025. 12. 17.(수) ~ 12. 23.(화)	- 본교 입학 홈페이지(enter.anyang.ac.kr)에서 조회 -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서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등록이 처리되며,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 2025. 12. 23.(화), 18:00까지 통보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2026. 2. 3.(화) ~ 2. 5.(목)	-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 합격생은 반드시 본교가 정한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선발원칙 및 지원방법

- 본 대학교 캠퍼스는 안양캠퍼스, 강화캠퍼스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사범계 학과(기독교교육과, 유아교육과), 공예예술학과,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스포츠계열자유전공은 모집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학과는 제1지망만 허용하며, 본 대학교 동일 전형에 복수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자는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 하여야 합니다.
 - 입학원서에 연락처(주소와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입력)하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각종 통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합격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대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이후에 지원 자격을 검토하여 자격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 상기 항목 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 세부지침에 따르며 입학 후 제반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에 따릅니다.

구분	유형	지원자격
정원 외	재외국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아래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학력 요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자격요건 1)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 / 사업 /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2)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 / 사업 / 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 국외 체류 기간 - 학생: 학생 국외 재학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 재학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전 교육과정 이수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상자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단,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유효기간 내)
완전 정원 외	북한 이탈주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로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1.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

- 가.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 나.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2. 중복학기 인정

- 가.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 국내학교, A :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는
G4-2로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는
G9-1로 대체 가능

G11-1은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3. 기타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
해외재학기간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외체류일수	• 해외체류일수는 초·중·고등학교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실제 해외 재학여부를 판단함

4. 외국학교 인정기준

- 가.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나. 해당국 교육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함. 유아원·유치원,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다.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함[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근무 국가의 지역상황(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3국 수학을 인정함(제3국 수학사유서 제출)]
- 라. 해외 고교과정에 재학 또는 재학 후에 국내 고등학교 과정으로 신입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5.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학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 1개 학년 2학기제)에 맞추어 계산함(단,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나.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제별 자격 인정 여부
 - 해외 1개 국가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고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단, 해외의 1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도 학제가 동일하지 않은 2개 학교 이상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 이수해야 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6. 기타사항

- 가. 특례자격 인정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일자 유효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1. 평가 방법

전형명		전형 요소
재외국민	영주교포	서류평가 100%
	국외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중·고교 성적, 학교생활, 수상실적, 여학능력 봉사활동 등 교내·외 활동, 체류 국가 성적 등 각종 실적 증빙자료를 종합 심사합니다.

※ 음악학과의 경우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유곡 1곡의 동영상(1분 30초 이내)을 MP4파일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단, 본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외국고 졸업 시 해당없음)

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으로 전형총점(100점)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 비율을 정량 감점함

나. 조치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합산하여 감점함

조치사항	1~3호	4~5호	6~7호	8~9호
감점	0점(0%)	3점(3%)	5점(5%)	10점(10%)

3. 선발방법

가. 전형 성적에 따라 지원학과와 관계없이 서류평가로 선발합니다.

나. 별도의 최저학력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다.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별도 면접이 있을 경우 면접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동점자는 2026학년도 전형 세부지침에 의해 처리합니다.

마. 본 요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세부지침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1. 공통서류(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 입학원서, 재학기간 심사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

2. 추가서류

(●: 필수 제출사항 / ○: 해당 시 제출사항)

제출서류명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 주민
	영주교포	국외근무자 의 자녀	유치·파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아포스티유확인서 혹은 재외교육기관 영사확인서)	●	●	●	●	●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재학기간 연, 월, 일 표기)	●	●	●	●	●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성적이 기록된 생활기록부’로 성적증명서 대체 가능)	●	●	●	●	●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		●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학생) (외국국적취득외국인은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부·모·학생)	●	●	●	●	●(학생)	
여권 사본 (부·모·학생)	●	●	●	●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모·학생)	●	●	●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	●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		
영주권 사본 (부·모·학생)	●					
제3국 수학사유서 <서식 1>		○	○	○		
학력조회 동의서 <서식 2>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통일부보호대상자 증명서						●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교육감이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증명서)						●

○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TOPIK 3급 이상, 유효기간 내)

3.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입학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기간 안에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시 일정상 부득이하게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편배달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해서는 본교에 책임이 없습니다.

외국인 서류 제출 관련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 간 협약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방법

- 외국에서 초·중·고등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고 귀국하여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가. 외국에서 재학·졸업하였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발급 받은 후,
나.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1) 아포스티유확인서 발급기간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 2)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 1)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 2)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중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문서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서’ 효력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협약가입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은행, 관공서, 회사, 법률사무소, 학교 등 외국공문서를 자주 대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협약가입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공증문서)에 대해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 외국공문서에 부착된 아포스티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해당국가 주한공관 또는 외교통상부에 해당 아포스티유의 일련번호, 서명자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4. 1. 11. 현재)	
지역	국가명
아시아 ·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안티가바바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 중동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①)	
3. acting in the capacity of (②)	
4. bears the seal/stamp of (③)	
Certified	
5. at (④)	6. (⑤)
7. by (⑥)	
8. No (⑦)	
9. Seal/stamp (⑧)	10. Signature (⑨)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배경 디자인은 상이할 수 있으나 확인서(Apostille) 서식은 협약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을 사용	

※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 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영사콜 센터(02-3210-04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개인정보는 지원자의 동의하에 입학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본교 규정에 따라 입학 및 학사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본교는 원서접수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주)유웨이애플라이(www.uwayapply.com)’에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험번호, 전형유형, 지망모집단위, 출신고교명 및 졸업일, 지원자 주소 및 전화번호, 지원자 이메일, 긴급연락처, 전형료/등록금 반환 계좌번호 등

1. 원서접수 방법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본교 입학 홈페이지(enter.anyang.ac.kr)에서 원서접수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주)유웨이애플라이(www.uwayapply.com)에 접속하여 ‘안양대학교’ 선택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보호자 등 타인 아이디로 원서접수 불가)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접수관련 동의서 확인 후 진행
원서 작성	■ 「2026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지원자의 기본 신상정보 및 지원사항을 정확히 기재 ■ 자격 구분에 본인의 특례 ‘자격구분’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하며, 누락·오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여권, 외국인등록증에 따라 정확히 기재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지원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재외국민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뒷자리는 남자의 경우 5999999, 여자의 경우 6999999로 입력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JPEG 형식)로 업로드함
원서 작성사항 확인	■ 전형료 결제 전 반드시 최종 작성 내용을 확인해야 함
전형료 결제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을 통하여 전형료 납부 ■ 인터넷 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후에는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변경 불가
서류제출	■ ‘제출서류’를 아래 서류제출 기한까지 등기우편(우편발송 부착용 겹표지 출력) 발송 - 제출기한: 2025. 7. 7.(월) ~ 7. 11.(금) 17:00 도착분까지 - 제 출 처: (우)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안양동) 안양대학교 수봉관 603호 입학처 ※ 우편발송 부착용 겹표지(주소)를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전형 및 모집단위 변경, 접수 취소 등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초본 등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다. 전형기간 중 지원자 또는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 시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연락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라. 수험표는 원서접수 사이트(www.uwayapply.com)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마. 인터넷으로 입력한 내용과 사실이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바. 전형료 결제(입금)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1. 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금지

-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복수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 2026학년도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나. 이중등록 금지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 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6회)

-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포함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단,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제외)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가. 지원자 개인정보자료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는 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입학전형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됩니다.

나. 제3자 제공

- 수집된 항목 중 합격자에 한하여 신한은행에 등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 관련시스템 정보이용 제공 여부

가.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 정보이용 제공 여부

- 이 시스템은 위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사전에 위반자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지원자격 및 전형일자 확인 여부

- 지원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자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여부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발견한 경우, 지원자가 지원한 타 대학에 이 사실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1. 전형료

전형명	모집단위	전형료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전 모집단위	100,000원

2. 전형료 반환기준

- 가.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사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나. 단순 착오, 단순 변심, 결격 및 결시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본교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함을 사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단, 질병, 사고 등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있을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입학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

1. 등록절차를 완료한 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본교 입학처로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등록포기 및 환불 신청을 한 경우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후 12시 이후 환불 신청은 다음날 오전 중에 처리되며, 금요일 오후 12시 이후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에 환불됩니다. 단, 환불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오전 중에 환불 됩니다.
4. 등록금 환불 신청기한이 경과된 이후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 1호「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합니다(학기 개시 후 환불자는 자퇴 처리하고 등록금 환불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함)
5. 신청 절차: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enter.anyang.ac.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3국 수학사유서

수험번호		성명	
지원학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 학생의 수학국가가 보호자의 근무국과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근무국가		학생 수학국가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		학생의 해외수학기간	

※ 특례기간에 해당하는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학생의 수학국가가 복수일 경우 각각의 국가명과 국가에서의 수학기간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국 수학 사유

수학사유 심사 후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인)

본인 : (인)



ANYANG UNIVERSITY

Office of Admission, Anyang University

22 Samdeokro 37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Tel 82-31-463-1234~7

Fax 82-31-467-0760

LETTER OF AGREEM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attended (*).

I have applied to Anyang University in Anyang, Gyeong-gi, Korea for the 2026 academic year.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Anyang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Name : * _____ Signature : * _____

Date of birth : * - -

Date of admiss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 * - -

Date of graduation (transfer to another school) : * - -

Date : - -

※ 지원자는 재학한 해외학교 수만큼 본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일자 표기 Ex) 06(월:M) - 10(일:D) - 2025(년:Y)